



› 2022 클럽라이센싱 규정 ‹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자격부여주체

## 제2장 클럽자격부여기준

제5조 기준의 의미 등

### 제1절 스포츠기준

제6조 스포츠기준 설명

제7조 선수 계약

제8조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

제9조 유소년 육성프로그램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

제11조 경기규칙, 심판교육, 비리근절, 반도핑 교육에 대한 참여

### 제2절 기반시설기준

제12조 기반시설기준 설명

제13조 클럽의 경기장소유 등

제14조 관중석 및 경기장 수준

제15조 훈련시설

제16조 경기장규칙

### 제3절 인사 및 행정기준

제17조 인사 및 행정기준 설명

제18조 클럽사무국

제19조 단장

제20조 사무국장

제21조 재무담당

제22조 안전담당

- 제23조 미디어담당
- 제24조 의료지원담당자
- 제25조 의무트레이너
- 제26조 클럽 감독
- 제27조 클럽 코치
- 제28조 유소년감독
- 제29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명확성
- 제30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계약변경 등
- 제31조 시즌 중 클럽관계자의 변경

#### **제4절 법적기준**

- 제32조 이행확인서 등
-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
- 제34조 문서의 제출
- 제35조 징계규정
- 제36조 선수 및 직원 행동강령
- 제37조 법률담당자 및 자문

#### **제5절 재무기준**

- 제38조 재무기준설명
- 제39조 연간재무제표 및 회계감사
- 제40조 이행지체 된 보수 및 세금
- 제41조 미래재무정보

#### **제3장 자격부여기관 등**

- 제42조 협회의 클럽자격업무 담당부서
- 제43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 제44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 제45조 클럽자격재심위원회

#### **제4장 지원클럽의 자격 및 의무사항 등**

- 제46조 지원클럽의 자격
- 제47조 자격증의 발급, 유효기간, 양도 및 취소

## 제5장 절 차

### 제1절 1차 심사절차

제48조 신청절차

제49조 심사준수사항

### 제2절 재심절차

제50조 재심신청권자 등

제51조 재심신청기간 등

제52조 불가쟁력

## 제6장 징 계

제53조 징계의 종류

제54조 징계절차

## 제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국내대회의 적용

제3조 제 1절 7조 ‘선수 계약’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4조 제 1절 10조 ‘유소년 팀의 조직’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5조 제 4절 33조 ‘클럽의 지배구조’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K3·4리그의 참가자격 및 자격의 부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① 「리그」라 함은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K3·4리그를 말한다.
- ② 「참가자격」이라 함은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③ 「필수기준」이라 함은 위 제1항의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리그에 참가할 수 없는 기준을 말한다.
- ④ 「기본기준」이라 함은 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리그에 참가할 수 있으나 협회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 ⑤ 「권장기준」이라 함은 리그의 출전자격 제한 등을 포함한 제재와는 관련이 없으나, 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클럽들이 지향해야 할 기준을 말한다.
- ⑥ 유소년이라 함은 18세 이하의 선수로서 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⑦ 클럽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클럽자격 부여신청을 한 클럽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 ⑧ 클럽관계자라 함은 본 규정의 제19조 내지 제28조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리그에 참가 및 참가 예정인 클럽에게 적용한다.

### 제4조 자격부여주체

리그의 참가자격은 협회가 부여한다.

## 제2장 클럽자격부여기준

### 제5조 기준의 의미 등

- ① 리그에 참가한 기존 클럽 및 참가 예정 클럽은 본 규정의 필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리그에 참가한 기존 클럽 및 참가하려는 클럽은 기본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6장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③ 리그에 참가한 기존 클럽 및 참가 예정 클럽은 권장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절 스포츠기준

### 제6조 스포츠기준 설명

클럽은 우수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 계약, 의료 지원시스템 및 유소년 육성에 대한 세부 정책을 수립하여 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선수 계약(필수기준)

클럽과 선수간의 계약 관련 사항은 「K3·4리그 선수 계약 세칙」에 의거한다.

- ① K3클럽은 최소 20명, K4클럽은 최소 5명 이상의 연봉계약 선수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며, 연봉 계약의 최저 금액은 선수 계약 세칙에 의거한다.
- ② 단, 외국국적 선수는 위 최소 인원내 포함되지 않는다.

### 제8조 선수들에 대한 의료지원(필수기준)

클럽은 소속 및 입단 예정 선수에게 매년 심혈관검사가 포함된 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선수 등록 시 클럽은 선수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 제9조 유소년 육성프로그램(기본기준)

클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소년 육성프로그램 계획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철학
2. 유소년 팀 또는 부(이하 '유소년 팀')의 조직도, 예/결산 현황
3. 유소년 팀 관리 담당자(지도자, 의료담당자, 관리자 등)들의 현황 및 업무 분장 등
4. 유소년 팀이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훈련시설 등
5. 축구교육 프로그램
6. 경기 규칙, 심판교육, 비리근절, 부정행위 방지 등 교육계획

###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필수기준)

- ① 클럽은 아래 제1호의 유소년 육성팀 중 최소 1팀은 반드시 협회에 등록하여 협회 주최의 리그 및 공식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유소년 육성팀(U-18, U-15 또는 U-12)
  2. 유소년 보급팀(U-18, U-15 또는 U-12)
- ② 위 제1항 제2호의 유소년 보급팀은 협회 등록 및 협회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식 대회 참가를 권장한다.

### 제11조 경기규칙, 심판교육, 비리근절, 반도핑 교육에 대한 참여(필수기준)

클럽은 그 소속 선수, 코칭스텝, 사무국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협회 또는 협회로부터 위임 받은 단체의 교육에 참가 시키고, 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2절 기반시설기준

### 제12조 기반시설기준 설명

클럽은 선수, 관중, 미디어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K3·4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및 기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제13조 클럽의 경기장소유 등(필수기준)

- ① 클럽은 경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최소한 심사 년도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경기장 사용 협약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 제1항의 경기장은 클럽의 연고지역 관할 범위(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어야 하며, 「K3·4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따라 협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홈경기장이 연고지역 관할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협회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관중석 및 경기장 시설(필수기준)

- ① 클럽은 관중석 등이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되었는지, 건축 당시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시설인 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는 관련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아래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에 의거하여 최소 1,000석 이상 보유
  2. 협회에서 승인한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경기장 시설 구비
- ③ 클럽은 야간 경기 개최를 위해서는 1,000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④ 위 항에 명시된 구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협회의 특별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훈련시설(필수기준)

- ① 클럽은 상시 사용 가능한 훈련장을 1개 이상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 ② 위 훈련장에는 라커룸 및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제16조 경기장규칙(기본기준)

클럽은 경기장 규칙을 제정하여 관중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 규칙에는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장허가기준
2. 경기의 취소 또는 연기
3. 출입통제지역 출입, 물건 던지는 행위, 욕설 및 인종차별 행위 등의 금지 및 위반에 대한 제재
4. 음주 및 불꽃놀이 등에 관한 제재
5. 위험 예방을 위한 착석 기준
6. 기타 관중의 안전과 편의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제3절 인사 및 행정 기준

#### 제17조 인사 및 행정 기준의 설명

클럽은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자(단, 지도자의 경우 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보유)를 채용하거나 지정하여 클럽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8조 클럽사무국(필수기준)

① 클럽은 클럽 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구분	권장	의무
K3리그	단장, 사무국장 포함 최소 10인	단장, 사무국장 포함 최소 6인
K4리그		단장, 사무국장 포함 최소 4인

② 클럽은 사무국의 인적 구성 및 업무 분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 계획에 대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단장(필수기준)

클럽은 사무국 업무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이행할 수 있는 단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20조 사무국장(필수기준)

클럽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 제21조 재무담당(필수기준)

① 클럽은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재무업무 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공인된 회계, 세무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클럽의 재무담당자는 의무적으로 재정보증보험 가입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예방 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향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클럽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22조 안전담당(필수기준)

- ① 클럽은 안전 및 보안업무 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향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클럽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23조 미디어담당(필수기준)

- ① 클럽은 미디어 업무를 책임지는 미디어담당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향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클럽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24조 의료지원담당(기본기준)

- ① 클럽은 선수단에 대한 의료지원 및 도핑방지정책을 책임지는 의료지원담당자를 채용하거나, 외부 단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 ② 의료지원담당자는 자신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인지를 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향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클럽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25조 의무 · 트레이너(필수기준)

- ① 클럽은 선수들에 대한 부상예방 및 재활 업무를 담당하는 의무 · 트레이너를 고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모든 경기 시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
- ② 의무 ·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보건복지부), 간호사(보건복지부), 건강운동관리사(문화체육관광부), 선수 트레이너(사단법인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운동처방사(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중 1개의 면허 또는 자격을 반드시 소지한 자여야 한다.

### 제26조 클럽 감독(필수기준)

- ① 클럽은 훈련 및 시합 등을 총괄하는 감독을 고용하여야 한다.
- ② 감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
  2. AFC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③ 감독은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7조 클럽 코치(필수기준)**

- ① 클럽은 훈련 및 시합 등을 관장하는 코치를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코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AFC B급 또는 GK 레벨2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
  2. AFC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 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③ 코치는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8조 유소년팀 감독(필수기준)**

- ① 클럽은 유소년 팀을 지도할 감독을 고용하여야 한다.
- ② 유소년 감독의 자격관련 사항은 협회의 등록규정에 따른다.

#### **제29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권리·의무의 명확성(기본기준)**

클럽은 제19조 내지 제28조까지에 해당되는 자들을 채용하거나 그 업무를 위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협회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 클럽과 클럽관계자 사이의 계약변경 등(기본기준)**

클럽은 제19조 내지 제28조까지에 해당되는 자들의 계약서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약서 등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시즌 중 클럽관계자의 변경(기본기준)**

- ① 클럽은 제19조 내지 제28조까지에 해당되는 자들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상호 간의 계약 작성 후 14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제19조 내지 제28조까지에 해당되는 자들의 변경사항에 대한 협회 보고와는 별도로 각 클럽의 책임 하에 협회 등록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절 법적기준**

### 제32조 이행확인서 등(필수기준)

- ① 클럽은 협회에서 지정한 양식에 의거한 이행확인서 및 정보요구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협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위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클럽은 제1항의 내용을 선수, 지도자, 클럽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교육하여야 한다.

###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필수기준)

- ① 리그 참가 클럽은 독립된 법인 형태로 리그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② 독립법인으로 구성된 클럽은 협회에 지배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배구조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클럽은 독립법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클럽의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리그 참가가 제한 될 수 있다.
  1. 클럽 또는 해당 클럽의 주주나 사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스포츠적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나 증권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2. 클럽 또는 해당 클럽의 주주나 사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팀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
  3. 클럽 또는 해당 클럽의 주주나 사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관리기구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고용 또는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가지는 경우
  4. 클럽 또는 해당 클럽의 주주나 사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주주나 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클럽 주주나 사원의 투표권 50% 이상을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다른 클럽의 주주가 되는 경우
  5. 클럽의 구성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6. 기타 클럽 또는 해당 클럽의 주주나 사원이 동일한 대회 또는 리그에 참가하는 다른 클럽의 경영, 행정 또는 스포츠적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제34조 문서의 제출(필수기준)

- ① 독립법인의 형태로 구성된 클럽은 협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 주사무소 주소, 법인 형태, 대표이사나 대표자 포함)
  3.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인감증명서

4. 사원명부 또는 주주명부
5. 본 장 제3절에 기재된 자들과 체결한 계약서
6. 이행확인서
7. 정보요구 및 이용동의서

### 제35조 징계규정(기본기준)

- ① 클럽은 법률과 협회, AFC 및 FIFA의 정관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들에게 적용될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징계규정에는 준수 사항, 제재, 징계절차가 규정되어야 한다.

### 제36조 선수 및 직원 행동강령(권장기준)

클럽은 FIFA 행동강령 등을 참고하여 선수 및 직원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제37조 법률담당자 및 자문(권장기준)

- ① 클럽은 클럽의 법적분쟁예방 및 분쟁해결, 법률교육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클럽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절 재무기준

### 제38조 재무기준의 설명

클럽은 클럽 재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유치를 이끌어내어 축구산업이 발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9조 연간재무제표 및 회계감사(필수기준)

클럽은 외부의 회계법인 또는 공인된 회계전문가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아 재무제표 등과 감사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 이행지체 된 보수 및 세금(필수기준)

클럽은 올해 8월 31일까지 전·현직 피고용인(선수, 사무국 직원, 재무담당자, 보안담당자, 의사, 의무트레이너, 1군 감독·코치 및 유소년 감독·코치 등 클럽과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인력)에게 전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지급금 및 세금의 연체가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단, 신청 년도 3월말까지 지급한 경우 및 위 자들과의 합의로 변제기 일을 연장했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분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1조 미래재무정보(기본기준)

- ① 클럽은 협회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기년도 예산 실적
  - 2. 차기년도 예산서
- ② 클럽이 제출한 전기년도 예산 대비 실적이 현저히 상이할 경우 협회는 이를 자격 부여 심사의 자료로 평가할 수 있으며, 차기년도 예산서가 재무적으로 적정하지 않을 경우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 ③ 클럽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클럽은 반드시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자격부여기관 등

#### 제42조 협회의 클럽자격업무 담당부서

- ① 협회는 클럽자격 부여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둔다.
- ② 담당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자격부여 제반 업무
  - 2. 위원회 업무의 지원
  - 3. 클럽에 대한 지원, 상담 등
- ③ 담당부서는 업무 처리 중에 지득한 클럽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 제43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 ① 클럽자격심의위원회 및 클럽자격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협회 이사회가 임명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③ 위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4조 클럽자격심의위원회

- ①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클럽자격부여, 취소 및 본 규정에 의한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 제45조 클럽자격재심위원회

- ①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클럽자격부여, 취소에 관한 재심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 제4장 지원클럽의 자격 및 의무사항 등

#### 제46조 지원클럽의 자격

클럽은 협회에 등록된 클럽 및 등록 예정 클럽으로 한다.

#### 제47조 자격증의 발급, 유효기간, 양도 및 취소

- ① 협회는 각 위원회에서 클럽 자격 부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자격에 대한 효력기간은 자격을 받은 다음해 연말까지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 1. 클럽이 파산한 경우
  - 2. 클럽자격부여 후 제 2장의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 3. 기타 법원의 결정 등 클럽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클럽은 자격을 타 클럽이나 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자격을 부여 받은 클럽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거나 타 클럽에 인수, 합병된 경우 기존에 부여된 자격은 상실되며, 추가적인 자격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제5장 절 차

#### 제1절 심사절차

## 제48조 신청절차

- ① 클럽은 자격부여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② 클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클럽이 서류 등을 준비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청기간종료일까지 지원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지원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클럽의 자격부여 신청을 받고, 미비한 점이 발견된 경우 2주 안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명해야 한다. 클럽이 기한 내에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당부서는 클럽자격심의위원회에 보완 전의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9조 심사준수사항

- ① 협회는 심사하는 모든 클럽에 공정하여야 한다.
- ② 클럽은 협회의 자격심사와 관련해서 협회 등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클럽자격심의위원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부여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징계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2절 재심절차

### 제50조 재심신청권자 등

- 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1. 클럽자격심의위원회로부터 자격부여 신청이 기각된 자
  2. 클럽자격심의위원회가 자격을 취소한 자
  3. 클럽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본 규정을 위반하는 등 재심을 통하여 결정이 변경될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② 클럽은 재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제51조 재심신청기간 등

- ① 재심은 1차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기간이 지난 재심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 ②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제①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류 등은 재심의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
- ③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 기일을 지정하고, 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클럽에게 진술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 ⑤ 클럽자격재심위원회는 재심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재심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52조 불가쟁력

클럽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이 없거나 재심이 결정되면 이에 대하여 다룰 수 없다.

## 제6장 징 계

### 제53조 징계의 종류

클럽 및 자격을 부여 받은 팀이 본 규정을 포함한 협회의 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경고
2. 벌금
3. 승점감점
4. 무관중 경기
5. 중립지역 경기
6. 신규 선수 영입 금지
7. 자격정지
8. 하위리그로 강등
9. 자격 박탈

### 제54조 징계절차

징계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7장 부 칙

### 제1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9년 8월 30일 개최된 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1년 2월 15일 개정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클럽자격심사위원회 의결사항(2021년 10월 5일)을 승인하고 개정되었다.

### 제2조 국내대회의 적용



클럽의 본 규정에 따른 협회 주최 및 주관 대회의 참가기준은 2021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제1절 제7조 ‘선수 계약’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2019 K3리그 참가클럽과 신규 참가클럽은 예외로 하여, 선수 계약 세칙에 따라 연도별 연봉 계약 선수 수를 준수하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수들과는 반드시 ‘수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당계약(훈련, 출전, 승리, 연승수당 등)’의 지급 조건은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4조 제1절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 조항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본 규정 시행 당시 제10조 유소년 팀의 조직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2019 K3리그 참가클럽과 신규 참가클럽은 2022년도 리그 참가 전까지, 2019 내셔널리그 참가클럽은 2023년도 리그 참가 전까지 제10조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제5조 제4절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 미충족 클럽에 대한 경과 조치**

1. 본 규정 시행 당시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3·4리그 참가 클럽은 본 규정 시행 이후 2021년 11월 30일 제33조의 필수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제33조 클럽의 지배구조에 대한 조건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단이 리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연회비 이외 축구발전지원금(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1년 10월 5일 클럽자격심의위원회 의결, 2021년 12월 14일 이사회 승인)

### **제6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클럽라이센싱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결정한다.